

고혈압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제정 관련 질의응답

■자료출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Q1 이미 고혈압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기존 환자의 적용방법

A1

○고혈압약제 일반원칙의 단독요법은 2013.1.1일 이후 처음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됨.

○기존환자(2013.1.1일 이전 고혈압약제를 복용하던 환자)는 기존요법을 지속 시 급여 인정하되, 4성분이상 처방 또는 권장되지 않는 병용조합을 처방하는 경우는 일반원칙에 따라 투여소건을 기재해야 함.

Q2 급여기준 대상 환자 : 아래의 상병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고혈압환자

A2

상 병	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병코드
심혈관계 질환	협심증 I20.x
	심근경색(후) I21.x, I22.x, I23.x, I25.2
	좌심실비대 I51.7
	심부전증 I11.0, I13.0, I13.2, I42.x, I43.x, I50.x
	허혈성 심질환(기타급성 및 만성) I24.x, I25.x
뇌혈관질환	I60.x, I61.x, I62.x, I63.x, I64.x, I65.x, I66.x, I67.x, I69.x
만성신질환(단백뇨 포함)	I12.x, I13.1, N03.2-N03.7, N05.2-N05.7, N06.x N18.x, N19.x, N25.0, Z49.0-Z49.2, Z94.0, Z99.2
당뇨병	E10.x, E11.x, E12.x, E13.x, E14.x
말초혈관질환	I70.x, I71.x, I73.1, I73.8, I73.9, I77.1, I79.0, I79.2, K55.1, K55.8, K55.9, Z95.8, Z95.9

Q3 동일 성분군 분류

A3

○고혈압약제를 12개의 세부 약력기전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기전에 해당하는 성분군을 동일 성분군으로 분류함.

①	thiazide 계
② Diuretics	loop
③	K ⁺ sparing
④	other
⑤ β -blocker	
⑥ Calcium channel blocker	dihydropyridines
⑦	nondihydropyridines

⑧	ACE inhibitor
⑨	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
⑩	Centrally acting agent
⑪	α -blocker
⑫	vasodilator

Q4 혈압 수치 기재 여부

A4

○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,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음.

Q5 생활습관 개선 권장의 의미

A5

○생활습관 개선은 체중감량, 저염식이(low salt diet), 운동, 금연, 절주 등 고혈압 약물치료에 보조적인 비약물요법으로,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고혈압환자에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장하고 있음.

Q6 약제 투여원칙 중 ‘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.’의 의미

A6

○제 2기 고혈압(stage 2) 환자는 처음부터 2제 요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, 복합제의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. 단 복합제를 투여하는 경우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.

Q7 약제 투여원칙 중 “4성분군 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시 사례별로 인정함”의 의미

A7

○청구명세서 상 특정내역란(JX999)에 의학적 소견을 기재

Q8 약제 투여원칙 중 2제 요법시 권장되지 않는 병용 조합의 경우 타당한 사유 기재시 사례별로 인정함의 의미

A8

○청구명세서 상 특정내역란(JX999)에 사유를 기재토록 하고, 각 각의 상병코드를 기재
(예시)

- Diuretic + α blocker (ex, 양성전립선비대증이 있는 고혈압 환자)
- β blocker + ACE inhibitor or ARB (ex, 부정맥이 있는 고혈압 환자, 갑상선기능항진증을 가진 고혈압 환자)